

# 산업자문 운영 규정

제정 : 2012. 11. 08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자 : 산학협력단(02-950-5424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산업교원 구성)	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	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	제7조(실적평가반영)	
제8조(기타사항)		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 9항에 근거하여, 핵심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15.02.06)

1. "산업자문"이라 함은 한국성서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등"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각 전문직의 지식, 기술, 가치 등 기본영역과 경영이나 컨설팅 등 응용영역에서 자문 및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산업교원"이라 함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한국성서대학교산학협력단 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**제3조(산업교원 구성)**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산업교원은 컨설팅분야 및 기술 분야, 경영 분야, 디자인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**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**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일정액(부가세 별도)을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**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**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100%를 배분한다.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수시로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**제7조(실적평가반영)**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<b>산업자문 신청서</b>		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선택)	지식 및 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				
신청기관(업체)	기관명		대표자		
	담당자	연락처:		E-mail: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 (총 시간)			산업자문료	(원)	
산업자문 주제					
산업교원 (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)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제안					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기관 :  
(사전에 선정된 경우)한국성서대학교

대표 : (인)  
산업교원 : (인)

**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**

